

2005. 4. 29(금) 10:00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2. 거창군세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1. 2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 20

다. 의안번호 : 제2005 - 1호

라. 상정일자 : 2005. 1. 27, 2005. 4. 27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은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0인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는 우리 사회가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임.
- 동 운동의 추진목적이 범도민적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5월 발족되어 구성·운영되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의 의식개혁운동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운동은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인력 및 재정에서 행정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4. 2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4. 25.

다. 의안번호 : 제2005 - 16호

라. 상정일자 : 2005. 4. 27.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시가표준액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6조)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안 제29조)
- 소형승용자동차로 적용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38조)
- 담배소비세 면제요건에 맞게 반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기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 신설함(안 제54조 제5항)
- 담배소비세(510원)의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 대통령령으로 인상(641원)함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함(안 제56조)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 납기일을 대상별로 재산세의 납기일과 같은 기간으로 개정함(안 제91조, 제92조)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함(안 부칙 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26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임.
  - 토지는 종전 공시지가의 46%를 적용하던 것을 50%로, 건물은 18만원/m<sup>2</sup>을 46만원/m<sup>2</sup>의 50%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에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액이 크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과세표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2004, 2005년도 인상분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보다 41.5% 인상됨.
- ⇒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율로써 이를 조정토록 하며, 직전연도보다 50%이상 증가시는 50%만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지방세법 제195조의2)
- 안 제29조는 재산세 적용세율로서 현행 9단계로 누증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율을 3단계로 낮은 누진율을 적용토록하며, 분리

과세하는 전담은 0.1%에서 0.07%로, 공장은 0.3%에서 0.2%로, 별장 등은 5%에서 4.0%로, 일반건물은 0.3%에서 0.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과다한 증가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검토됨.

집행부의 내부적인 검토결과 금년도 부과액이 전년도 수준보다 전체적으로 다소 감액부과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안 제38조는 승용자동차에 적용하는 소형차량 대상을 1,500시 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검토됨.

배기량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1,600시시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현재 40대로서 대당 세금차이는 96,000원으로 연간으로는 384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됨.

동 사항은 2005. 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함.

- 부칙 제2항의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것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징수실적은 2002년도 352천원, 2003년도 351천원으로 금액이 소규모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행정절차법」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3.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4. 2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4. 25.

다. 의안번호 : 제2005 - 16호

라. 상정일자 : 2005. 4. 27.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을 60제곱미터이하로 감면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함(안 제11조제1항2호)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 등이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할 경우 종전의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을 60제곱미터이하로 감면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하며, 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감면대상 규모를 하향조정함

(안 제11조제2항2호, 3호)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안 제14조)
-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4)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경감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0분의 2로 하도록 조항 신설함(안 제28조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종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구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전액 면제를 85제곱미터 이하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면적규모에 따라 경감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11조의 경우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단체 등이 구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60제곱미터이하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85제곱미터는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오히려 감면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오히려 상이한 조치로 판단됨.

현재 군내에는 조례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는 없으나 향후 민간 건설업체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시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건립 활성화를 위하여 149㎡까지 감면토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별 형편을 감안 조례개정토록 요구하였음.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149㎡까지 감면토록 조치하였음)

- 동 일부개정조례안중 감면규정의 경우 임대주택 감면조항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것이며, 기타 감면사항은 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으며, 「행정절차법」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3.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내용 및 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개정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정부의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현 거창읍지역의 아파트 부족난 해소와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수준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까지는 감면하지 않더라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6. 수정안 요지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이하 개정안과 동일)
②(생략)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생략)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이하 개정안과 동일)  3.<삭제>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제11조제1항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같은조제2항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